ZINUS

㈜지누스

이사회 규정



ZINUS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된 이사를 말한다.
2. “경영진”이라 함은 상임이사를 말한다.

제4조 (구성)

①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 자로 한다.

③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제5조 (이사회의 역할)

① 이사회는 회사 및 자회사의 경영전략과 경영목표를 승인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

② 이사회는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환경 및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활동내용, 자체평가결과 등 정기주주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 (이사의 권한 및 의무)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각 이사가 의안과 사유를 밝히고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이사회 의장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의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에 따른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소집통지)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은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결의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내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나.주주총회의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다.영업 보고서, 결산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2. 이사 등에 관한 사항

가.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

나.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이사의 보수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라.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 및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가.정관 개정안에 대한 검토

나.이사회 규정, 감사직무 규정

다.경영진 운영 규정, 상무대우운영규정

라.내부회계관리규정, 리스크 관리규정

4.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가.경영의 기본방침, 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이사, 경영진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조직, 인사, 급여에 관한 기본체계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라.주식, 자본금 및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5. 자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계약 등에 관한 사항

가.1건당 20억원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사항

나.1건당 자본총계(연결기준) (직전 회계연도말)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본의 출자

다.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로서 1건당 자본총계 (연결기준) (직전 회계연도말)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라.외국금융기관 등과의 포괄적 업무제휴, 자본의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제휴 또는 협약에 관한 사항

7. 리스크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가.리스크 관리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나.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다.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

8. 경영진 보수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가.경영진의 보수체계에 대한 기본방침의 수립 및 조정

나.경영진의 경영성과 측정

9. 고문, 명예이사 및 자문위원 등의 위촉에 관한 사항

10.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및 그 설정

2. 이사회내 위원회의 심의 및 결의사항

3. 다른 규정에서 정한 이사회 보고사항

제10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관계인 출석)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사회 지원)

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이사들의 자료 요청 등의 이사회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부속실을 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 (위임)

이사회는 법령,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6조 (사외이사 지원)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사외이사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② 회사는 이사회 참석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에게 음식물/선물, 교통비/출장비, 수당/사례비 등을 제공하며, 이사회 참석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를 부담한다.

ZINUS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3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2022. 5. 10.)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0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2022. 11. 7.)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7일부로 시행한다.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사항

2022년 11월 7일 제정

이사회 규정 제14 조에 의거 다음의 각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함

1. 건별 50억원 미만의 차입

2. 수출입 관련 무역 금융 및 지급보증 회전한도 설정

3. 어음할인, 매입 및 어음거래 약정

4. 자본금 30억원 미만의 출자 또는 주식의 매입 및 매각

5. 자금운용을 위한 유가증권(주식을 제외)의 매입 및 매각

6. 기승인된 투자사업 또는 프로젝트에 관련한 소요자금의 차입 및 지급보증

7. 거래금액이 30억원 미만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자금, 자산의 거래 또는 임대차

8. 최근 사업연도 연결기준 자기자본금액 5% 미만의 기존 보증 및 기존 차입의 기간 연장

9. 기타 상법,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회사의 일상 업무